## 시민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

제정 2003.11. 7 규정 제449호 개정 2006. 1. 9 규정 제531호 개정 2007. 6.15 규정 제584호 개정 2011. 3.21 규정 제666호 개정 2015. 1.16 규정 제76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1.16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시민서비스헌장"(이하 "헌장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(이 하 "공단"이라 한다)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,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, 잘 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말한다.(개정 2015.1.16)
- 2. "시민"이라 함은 공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 (개정 2015.1.16)
- 3. "헌장 제정부서의 장"이라 함은 헌장을 총괄 운영하는 주관부서장을 말한다.(개정 2006.1.9, 2011.3.21) 4. "서비스 제공부서의 장"이라 함은 각 처(실·원)장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단의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.

- 제4조(헌장의 제정 및 개정)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1.16)
  - ②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서비스 제공부서의 장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<삭 제> (2011.3.21)
- 제5조(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)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서비스는 시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민중심적일 것
  - 2.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
  - 3.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
  - 4.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민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할 것
  - 5.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
  - 6.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
  - 7.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(개정 2015.1.16)

제6조(헌장의 구성) 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헌장 전문
- 2. 시민을 맞이하는 자세
- 3. 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 및 시민협조사항
- 4.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
- 5.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
- 6.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
- 7.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
- 8. 각 서비스별 연락처 등

(개정 2015.1.16)

- **제7조(헌장의 공표 및 홍보)** 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서비스 제공부서의 장은 제·개정된 헌장 내용을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.16)
- **제8조(헌장의 이행)** ① 서비스 제공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②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, 최고품질의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.16)
  - ③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9조(이행실태 평가)**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에 대해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민불만사항의 처리 및 점검) ① 서비스 제공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시민의 불만사항을 구술· 전화·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.16)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민불만접수처리대 장(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장 포함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(개정 2011.3.21, 2015.1.16)

- 1. 접수일시
- 2. 시민불만을 제출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(개정 2015.1.16)
- 3. 불만내용
- 4.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
- 5.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
- ③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시민불만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, 처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.16)
- 제11조(보상) ① 서비스 제공부서의 장은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1.16)
  - ②제1항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서비스 제공 직원의 잘못이나 불충분한 안내 등으로 인하여 시민이 동일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방문

한 경우 (개정 2015.1.16)

- 2. 서비스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
- ③보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.
- 1. 시민 불편사항의 접수(개정 2015.1.16)
- 2. 서비스 제공 직원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(개정 2007.6.15, 2011.3.21)
- 3. 사실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공표된 대로 보상조치

**제12조** <삭 제> (2011.3.21)

제13조(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) 제9조의 평가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(2003.11. 7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제정공표된 고객서비스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6. 1. 9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6. 15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3. 21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6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